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5월 13일, 이수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5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 9.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법안심사제1소위(2026. 9.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이수진 의원)

현행법은 사회보장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국민이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서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제5조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도 친족,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등이 지원대상자의 사회보

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실제로 수급자격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급여 제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지원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자로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급여는 일반적으로 수급자에게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급여 수급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고, 관련 정보 부족

이나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 신청을 간주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제4조제1항에서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제6조 및 제7조에서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현행 신청주의 체계에 직권지급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사회보장급여는 수급권자의 권리 실현이라는 측면과 함께 개인의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직권지급을 허용할 경우에는 급여 신청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 급여 수급에 따른 의무 및 부담 등에 관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특히, 직권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원대상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여전히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공공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1)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성격의 급여에 대하여 동일하게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임.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와 같은 일부 서비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이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간주되어 급여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상담·사례관리·재활·돌봄 등 대인 서비스 성격의 급여는 지원대상자의 의사와 참여가 서비스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대상자가 해당 서비스를 원하지 않거나 이용 의사가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신청을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신청 간주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급여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를 한정하거나 적어도 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서영석)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